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종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15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9.

발 의 자: 장종태·박홍배·이건태

박용갑 • 이재관 • 박해철

조계원 • 문금주 • 최민희

허성무ㆍ이재강ㆍ김 윤

채현일 • 박희승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및 조리사·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·절차, 평가 및 시정명령·지정취소 사유 등에 관한 현행법상 규정은 없음.

이에 따라 교육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정을 권고하는 데 그쳐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및 조리사·영양사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·평가·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1조의3·제41조의4·제56조의2 신설 및 제56조 등).

법률 제 호
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의3 및 제4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1조의3(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 1조제1항, 제2항 및 제41조의2제8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전문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식 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식품위생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 다.

- 1.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
- 2.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
- 3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식품위생을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
- ②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력· 시설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(이하 "식품위생교육기관"이라 한다)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

하여야 한다.

- ④ 식품위생교육기관은 교육시간 준수, 교육 관련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인력·시설·설비 보유 현황 및 활용도, 교육과정 운영실태 및 교육서비스의 적절성·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있다.
-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절차, 평가 방법, 교육 내용·시간·방법 및 실시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- 제41조의4(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- 2.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
 - 3. 업무정지 기간에 교육을 실시한 경우
 - 4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위생교육 수료증을 발급

한 경우

- 5.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
- 6. 교육실적 및 교육내용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교육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
- 7. 제4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
- 8. 제41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시간 준수 의무 위반 등 식품위생교 육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
- 9.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의3제5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.
- 제5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.
 - ④ 제3항에 따른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시설·인력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- ⑤ 제3항에 따른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(이하 "조리사·영양사 전문교육기관"이라 한다)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⑥ 조리사·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시간 준수, 교육 관련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리사·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인력·시설·설비 보유 현황 및 활용도, 교육과정 운영실태 및 교육서비스의 적절성·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.
-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7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리사·영양사 전문교육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.
- ⑨ 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리사·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절차, 평가 방법, 교육 내용·시간·방법 및 실시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제8장에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6조의2(조리사·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리사·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,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, 시정을

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- 1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
- 3. 업무정지 기간에 교육을 실시한 경우
- 4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
- 5. 제56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
- 6. 교육실적 및 교육내용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교육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
- 7.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
- 8. 제56조제6항에 따른 교육시간 준수 의무 위반 등 조리사·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
- 9. 정당한 사유 없이 제56조제7항에 따른 조리사·영양사 전문교육 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.
- 제81조에 제1호의4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1의4.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취소
 - 2의3.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조리사·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식품위생교육기관 및 조리사·영양사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식품위생교육기관 또는 조리사·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은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식품위생교육기관 또는 조리사·영양사 전문교육기관 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41조의3(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제41조제1항, 제2항 및 제41조의2제8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식품위생교육의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. 1.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2.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3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식품위생을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인력·시설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 단.

- ③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(이하 "식품위생교육기관"이라 한다) 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.
- ④ 식품위생교육기관은 교육시 간 준수, 교육 관련 자료의 보 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위생교육기관의 인력·시설· 설비 보유 현황 및 활용도, 교 육과정 운영실태 및 교육서비 스의 적절성·충실성 등을 평 가하여 그 평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.
-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 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기관 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⑦
 제1항부터
 제6항까지에서

 규정한
 사항
 외에
 식품위생교

<신 설>

육기관의 지정 절차, 평가 방법, 교육 내용·시간·방법 및 실시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제41조의4(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식품위생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는 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전기를 명하거나 시정을 명할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- 1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

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경우
- 3. 업무정지 기간에 교육을 실 시한 경우
- 4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방법으로 식품위생교육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
- 5.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

제56조(교육) ①・② (생 략)
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 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 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- 6. 교육실적 및 교육내용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교육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
- 7. 제4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경우
- 8. 제41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시간 준수 의무 위반 등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준수사항을위반한 경우
- 9.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의3제5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 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.
- 제56조(교육) ①·② (현행과 같 음)
 -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항에 따른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식품위생 관련 교 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교육기관으로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지정하여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.

- ④ 제3항에 따른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설·인력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⑤ 제3항에 따른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(이하 "조리사·영양사 전문교육기관"이라 한다)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.
- ⑥ 조리사·영양사 전문교육기 관은 교육시간 준수, 교육 관 런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.
-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리 사·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인 럭·시설·설비 보유 현황 및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활용도, 교육과정 운영실태 및 교육서비스의 적절성·충실 성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 내 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 할 수 있다.

-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7 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조리사·영양사 전문교육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⑨ 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리사・영 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절 차, 평가 방법, 교육 내용・시 간・방법 및 실시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 한다.

제56조의2(조리사・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) ① 식품의 지정 취소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리사・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,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, 시정을 명할 수 있

- 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지 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경우
- 3. 업무정지 기간에 교육을 실 시한 경우
- 4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방법으로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
- 5. 제56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 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
- 6. 교육실적 및 교육내용 등이현저히 부실하여 교육 운영이어렵다고 판단된 경우
- 7.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경우
- 8. 제56조제6항에 따른 교육시
 간 준수 의무 위반 등 조리사
 ·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준
 수사항을 위반한 경우
- 9. 정당한 사유 없이 제56조제7

1. ~ 1의3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2.·2의2. (생략) <신설>

3. • 4. (생략)

항에	따른	조i	<u> </u> 리사	• 영	양사	전
문교	육기관	<u></u> 의	평기	-를	거부	- 한
<u>경우</u>						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 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.

대81조(청문)	

- 1. ~ 1의3. (현행과 같음)
 1의4.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
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취
 소
- 2. · 2의2. (현행과 같음)
 2의3.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
 조리사 · 영양사 전문교육기
 관의 지정 취소
- 3. 4. (현행과 같음)